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7587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7587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나90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R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C

판결 선고 2022. 12. 15.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나90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취소되는 부분은 채무자 D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위 채무자 지분 상당액을 공제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분할협의로 면제받은 상속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